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99년도 지방세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 조문 정리와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감면규정을 삭제하여 과세전환하고,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조례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안 제2조)

- 제목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 국가유공자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감면하였으나,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며,
- 면허세 감면대상 차량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 내지 6급)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한 차량으로 한정할 규정을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포함하고,
- 국가유공자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토록 개정

○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의 2)

- 장애인 차량관련 타 정책과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면허세 감면대상 차량의 범위를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한 차량으로 한정할 규정을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도 포함하고,
- 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토록 하며,
- 장애인 감면대상 차량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로 규정하고 있어, 각 자치단체마다 그 해석·운용에 혼란을 겪고 있으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장애인이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차량 1대”에 대하여 감면하는 규정으로 개정

○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9조)

-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현행 재산세 세율을 0.15%로 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50%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며,
- 전통건조물보존법의 폐지('99. 1. 21)에 따라 안 제9조제4항 삭제

○ 주차장에 대한 감면(안 제10조·제11조)

- 주차장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 주차전용건물에 대한 감면(안 제10조) 및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안 제11조) 규정을 삭제하여 과세전환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안 제13조)

- 단서의 인용조문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 제12조”로 함

○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안 제17조)

- 본문의 인용조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로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6조”를 “동법 제28조의5”로 함

○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23조의2)

- 본문의 인용조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의”로 하고,
- “동법 제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를 “동법 제121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로 하며,
- 단서의 인용조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로 함

3. 검토의견

이 개정 조례안은 '99년도 지방세 법령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 조문 정리와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감면규정을 삭제하여 과세전환하고,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조례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안 제2조의 제목변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조례에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면제대상자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로까지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처럼 조문의 제목을 변경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 제2조 제1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제1항에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인 부동산 소유자를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중상이자 개인이 취득하거나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로까지 확대하자는 것으로,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유족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례적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조례적용에 있어서 전국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 안 제2조 제2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대상 차량의 범위를 국가유공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한 차량 중 최초로 취득한 1대에 한하였으나,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차량도 포함하지만 국가유공자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감면하고, 다만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면허세 감면대상 차량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차량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고,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3·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제4호와 조건부면세와 그 장애인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등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 관련 타 입법정책과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면대상 차량은 조례에서는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 1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당해 조항의 해석이 불분명하여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등 해석·운영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당해 조항의 개정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은 당해 조항의 무분별한 적용을 피하여 국가유공자와 이들을 돌보아 주고있는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보장되도록 하자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 제2조의2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대상 차량의 범위를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한 차량 중 최초로 취득한 1대에 한하였으나, 개정안은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차량도 포함하지만 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감면하고, 다만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입니다.

면허세 감면대상 차량의 범위를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차량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고,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을 규정

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 제34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제5호와 조건부면세와 그 장애인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등 장애인 차량 관련 타 입법정책과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면대상 차량은 조례에서는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 1대”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로 하여 그 동안 자치단체별로 당해 조항의 해석이 불분명하여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등 해석·운영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당해 조항의 개정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은 당해 조항의 무분별한 적용을 피하여 장애인과 이들을 돌보아 주고있는 그 유가족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보장되도록 하자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 제9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개정안 본문은 현행 문화재 등에 경감 부과하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전액 면제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는 데에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행해지는 국가정책상의 배려라고 생각되며, 안 제4호는 전통건조물보조법이 1999년 1월 21일에 폐지됨에 따른 인용조문의 삭제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 안 제10조와 제11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주차장법 제21조에 의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는 물론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조례 제10조와 제11조에 의하여 주차전용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주차전용토지에 대하여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차장은 수익사업으로서 공공성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오히려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7조와 본 조례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서 개정안처럼 주차전용건물에 대한 감면 및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여 과세부과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 안 제13조·안 제17조와 안 제23의2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들 개정안의 내용은 인용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안 제13조), 그 동안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당해 인용조문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개정안은 조문내용의 변경에 따른 제목변경, 타 법령과의 입법 정책상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조문의 해석이 불분명하여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

영되는 조례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국가정책상의 배려 그리고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한 인용조문의 개정이라는 점 등에서 조례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지역적으로 달리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과세의 공평성과 조세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개정안처럼 개정함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안의 시행으로 입게될 세수손실에 대해서는 지방세원의 발굴 등 세수보전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